

[일련번호 : 16]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제경비(안전관리비 등) 정산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되며, 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발주자가 도급업체의 보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건강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제64조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실제 납부·지출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계약당사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은 검사 과정에서 계약 위반 또는 부당 사항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청구 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집행사진 등)를 제출받아 그 진위와 사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부당 청구 금액은 감액·정산하거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2025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경사로 시설정비 공사’ 등 4건의 공사에 대해, 준공금 지급 과정에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공사장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였다. 또한 준공 정산 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건설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실제 납부·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공사 제경비 정산에 대한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번	공사명	계약일	금액(천원)	부적정 내역
1	□□공사	2023.5.8.	14,022	· 건설폐기물 처리내역 부존재 (96,959원)
2	◆◆공사	2023.9.1.	28,054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상 건설공사명 미기재
3	◇◇사업	2024.8.13.	52,190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부존재 (9,019,171원)
4	▲▲사업	2025.5.19.	38,956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부존재 (1,870,392원)

[표] 공사 제경비 정산 소홀 내역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공사 대금 지급 시 제경비 정산 및 증빙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